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456

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 김도읍 • 주진우 • 조지연

박형수 · 조승환 · 박대출

김형동・구자근・윤한홍

김장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,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.

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 •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·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 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.

법률 제 호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제1조(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호가목 중 "미성년자·피한정후견인"을 "미성년자"로 한다.

제2조(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피성년후견인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14조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	
는 법인은 제13조에 따른 등록	
을 할 수 없다.	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1
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	
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	
가. <u>미성년자·피한정후견인</u>	가. <u>미성년자</u>
또는 피성년후견인	
나. ~ 라. (생 략)	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20조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	
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	
다.	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1
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	<u>나. 피성년후견인</u>
<u>년후견인</u>	
다. ~ 바. (생 략)	다. ~ 바. (현행과 같음)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